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금융투자업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10조제1항 중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영 제16조제10항 후단에 따라”를 “영 제16조제10항 후단 및 제271조의2제10항 후단에 따라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 또는 등록업무”로 한다.

제2-14조제5항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7조제1항제9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4조제8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동회사”를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7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1조제1항제5호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법 제161조제1항제8호의 결의를 한 경우
3. 영 제171조제2항제5호의 결의를 한 경우

4. 영 제171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4-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50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를 하는 업무 제4-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8조의4 (집합투자업자가 직접취득·처분 등이 가능한 사채권의 신용평가 방법) 영 제79조제2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사채권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을 말한다.

제4-5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6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법 제286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투자운용인력을 포함한다)”로,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나목,
같은 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문사모집합
투자기구등”을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4-102조제1항 후단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
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
권”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으로 한
다.

제4-102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
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4-103조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등”으로, “영 제77조의4제1항”을 “영 제77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5-23조 중 “영 제7조제5항제3호”를 “영 제7조제5항제4호”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7-11조의2, 제7-11조의3, 제7-11조의4, 제7-13조의2 및 제7-13조의3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1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수익자가 1인인 공제회·공제조합) ①

영 제224조의2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가.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다.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라.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인 공제회 또는 공제 조합

제7-11조의3(소규모 투자신탁 합병시 확인 항목) 영 제225조의2제1항 후 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
2. 합병 사전 통지, 수익증권매수청구 관련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3.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유사성 여부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7-11조의4(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주주가 1인인 공제회·공제조합) 영 제231조의2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7-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13조의2(소규모 투자회사 합병시 확인 항목) 영 제233조의2제1항 후 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7-11조의3 각 호

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13조의3(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유한책임조합원이 1인인 공제회·공제조합) 영 제238조제2항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7-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25조제6항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영 제225조의2제2항 각 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 영 제2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이미 설정·설립된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7-11조의3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것
제7-39조를 삭제한다.

제7-41조의2부터 제7-4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1조의2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① 영 제271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 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 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② 영 제271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

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4)·(5) 및 (6)
2. 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4)·(5) 및 나목(2)
3.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다목(2)·(4)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라목(2)·(4) 및 (5)
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은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영 제271조의2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은 영 제271조의3제2호 각 목과 같다.

제7-41조의3(투자광고 매체 등) 영 제271조의6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란 문자메시지, 전신 또는 모사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7-41조의4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영 제271조의7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각각 “1억원”을 말한다.

제7-41조의5부터 제7-41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1조의5 (변경보고의 적용제외) 영 제271조의8제2호에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3.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제7-41조의6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 등) ① 영 제271조의9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투자회사로서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 그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271조의9제5항에 따른 보고 서면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영 제271조의10제6항에 따른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1조의10제9항에 따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41조의7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영 제271조의11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4-20조제1항제10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7-41조의8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① 영 제271조의13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자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71조의13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14제7항에 따른 행위 준칙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영 제271조의13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100분의 30이상이므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30을 말한다.

④ 영 제271조의13제6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3.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등의 개요 및 기본 정보의 변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변경보고 서면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41조의9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 ① 영 제271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271조의14제5항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법 제23조제1항, 제249조의14제6항제2호 및 영 제271조의14제8항 등에 따른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원간에 출자한 지분을 장래에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하거나(양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이면계약 등에 따라 출자

비율, 출자방법 및 손익의 분배 등을 정관과 달리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1조의10(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방법) ① 영 제271조의15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외국 집합투자기구
2. 영 제271조의15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회사와 유사한 외국 회사

② 영 제271조의15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을 말한다.

1. 영 제271조의15제3항제1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각각 투자하는 날 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권 관련 사채권(영 제68조제4 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날에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의 권 리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41조의11(운용방법 제한의 예외 등) ① 영 제271조의17제2항제3호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또는 유상증자참여 등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임면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등 법 제249조의1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투자대상기업에 제7-14조제5호의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② 영 제271조의17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투자대상 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영 제271조의17제7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13조에 따라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 등이 발생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상장되거나 등록이 폐지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해산, 정리절차 개시 등 매각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증권의 투자가능 한도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④ 법 제249조의12제6항 단서에 따라 지분증권등을 1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제3항제1호·제2호 또는 영 제271조의17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해당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영 제271조의17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41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①

영 제271조의18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 장내·장외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방법 등의 결정 업무
2.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9조의1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의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흠결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41조의13(투자목적회사재산의 운용제한 등) ① 영 제271조의19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각각의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은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영 제271조의19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9조의12제4항 단서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등을 처분할 수 있다.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중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제7-41조의11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217조의19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9조의12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등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까지 그 지분증권등을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2. 제7-41조의11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및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 서식 및 절차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41조의14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절차 등) ① 영 제271조의21제4항 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기준을 상회할 것

2.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② 영 제271조의21제7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의 신청서,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영 제271조의21제8항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3(첨부서류를 포함한다)과 같다.

제7-41조의1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 신청) 영 제271조의23제2항의 처분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청 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41조의16(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영 제271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과 관련한 합의 또는 계약 등을 한 경우 관련 서류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를 위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46조, 제7-47조, 제7-47조의2, 제7-48조, 제7-49조, 제7-49조의2, 제7-50조, 제7-50조의2, 제7-51조 및 제7-5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목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3항, 제7-41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및 라목 중 “인가”를 “인가(등록)”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인가업무 단위”란을 “인가(등록)업무 단위”란으로 하고, 같은 목 3-1-2, 3-11-2, 3-12-2, 3-13-2란을 삭제하며, 같은 목

3-14-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4-1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별표 2 제1호라목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비고 제1호의2를 삭제한다.

1. 이 표에서 “증권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이 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채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영 제 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에 한한다.)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 2)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6) 「국가채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

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호의 국제금융기구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9)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

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다.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별표 2 제1호라목 비고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탁회사

- 2)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 3) 1) 및 2)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회사 또는 기관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 또는 기관 등
- 별표 2 제1호라목 비고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비고 제3호 중 “3-1-2, 3-11-2, 3-12-2, 3-13-2”를 “3-14-1”로하고, 같은 목 비고 제6호 중 “인가”를 “인가(등록)”으로 한다.

2의2. 이 표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협회가 정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1)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2) 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별표 2 제1호라목 비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집합투자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이하 이 호에서 “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를 설립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인력 중 2인이 별

표 13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하 “사회기반시설
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비고 제9호 중 “3-1-1, 3-1-2, 3-11-1, 3-11-2,
3-12-1, 3-12-2, 3-13-1, 3-13-2”를 “3-1-1, 3-11-1, 3-12-1, 3-13-1,
3-14-1”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 제4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3) 중 “인가”를 각각
“인가(등록)”으로 한다.

별표 3 제목 중 “제2-6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
2-12조제1항, 제8-79조제3항 및 제8-85조제3항 관련”을 “제2-6조제2
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2-12조제1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3항 및 제8-85조제3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4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5 제2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
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3 제1호 다목 중 “검사대상기관”을 “검사대상기관 또는 사회적
반시설운용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마목(중전의 바목) 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3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로 하고, 같은 별지 제2호 첨부서류 2-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금융회사인 경우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만 제출한다.

별지 제3호의3 6. 중 첨부서류 6-1.을 다음과 신설하고, 6-1부터 6-4까지를 각각 6-2부터 6-5까지로 한다.

6-1. 신청인이 법 제249조의15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3호의3 서명란 중 “제272조의2”를 “제249조의15”로 한다.

별지 제4호 3. 및 첨부서류 3-1. 중 “인가”를 “인가(등록)”으로 하고, 같은 별지 서명란의 “제16조제9항”을 “제16조제9항(또는 제271조의2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의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30호) 별표2 제1호라목 비고 제1호의2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 등록한 자는 별표2 제1호라목 비고 제2호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2호 다음에 별표 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3.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관련 사항	
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9조의3
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전부의 폐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17조제1항제6호
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합병 ·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해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17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17조제1항제4호

③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11조의6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13조의6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3조의6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의6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를 “투자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⑤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제2항제2호 “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법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13조의3제4항제1호 중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13조의4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제4호 중 “같은 법 제249조의2제3항”을 “제249조의7제1항”으로 한다.

⑦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신기술사업 금융업자에 한한다)”로 한다.

⑧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9조의2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제49조의2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제54조의3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지

[별지2의2]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신청서

1. 상 호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대표자 및 임원(준법감시인 포함)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법 제24조 각 항의 자격을 말한다.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준법감시인 포함)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4.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4-1.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5. 재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첨부서류**

- 6-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
- 6-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7.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7-1.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7-2.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8-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8-2.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8-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9.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 9-1.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9-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9-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